나는 국민의 알권리와 개인의 인권이 충돌한다면 ‘강력범죄 피의자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개인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는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법적 조항을 토대로 ‘어떤 권리의 침해를 최소화해야 더 큰 사회적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국가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헌법이 명시하는 내용을 제한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이란 국제법과 국제 규약, 그리고 국내법인 헌법 등에서 정의하고 규정하고 있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로 그 보편성이 강조된다. 이 중 무죄추정의 원칙은 헌법 제27조, UN 인권선언 제11조 등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피의자를 무죄로 추정한다고 보장하는 것이다. 이는 범죄자를 규명하는 것보다 무고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것을 더 중요시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형사 소송의 원칙이다.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보장되는 것은 침해되어서는 안되는 인권으로, 원칙 자체가 ‘공공의 이해관계보다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피의자가 범인이라고 확정할 수 있을 만큼 증거가 충분한 경우에도 개인의 신상공개는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피의자 신상공개는

국민의 알권리는 헌법 제2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언론, 출판의 자유로부터 도출할 수 있다.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에 대해 표현할 수 있게 국가 권력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알권리를 위해 국가에 필요한 특정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하지만 단지 ‘궁금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가 알권리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과 관련된 사안 또는 개별 국민에게 개인적으로 관련된 공적인 사안으로, 공공의 성격을 띠는 것으로 한정된다.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은 개인정보로 공공의 성격을 띤다고 볼 수 없으므로 국민의 알권리의 대상이 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만약 피의자가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강력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피의자에 관한 정보가 공공의 성격을 띤다고 가정하더라도, 그 신상정보가 공공과 개인의 권익과 삶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의자의 신상 공개는 대중의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한 것이며 알권리와는 관련이 없는 대중주의적 관점의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를 기본권이라고 하는데, 이 기본권에 대한 내용은 헌법 제27조 제2항에 규정돼 있으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되어서는 안된다. 기본권이 제한될 때는 반드시 ‘과잉금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이란 기본권 제한에 있어서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의 네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는 것이다.